

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725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10월 30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폭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의 복리향상을 위해 실비 진료비를 정액 건강관리비로 개정함은 타당하지만, 예산상의 한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강관리비 지원 금액을 월 5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건강관리비 지원 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수정함(안 제12조제3항).

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월 50만원 이내”를 “월 50만원, 월 30만원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50만원”을 “30만원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

현 행	개 정 안	수정(제안)안
<p>제5조(지원사업) 시장 은 강제동원 피해여 성근로자 지원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시행한다. <단 서 신설></p> <p>1. 지원 대상자에 대 한 생활보조비 지원 : 월 30만 원</p> <p>2. 지원 대상자에 대 한 진료비 지원 (본 인부담금 중 월 30 만원 이내로 한다)</p> <p>3. ~ 5. (생략)</p>	<p>제5조(지원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만,</u> <u>제1호 및 제2호에</u> <u>의해 법령 또는 다</u> <u>른 조례에 따른 지</u> <u>원대상자에서 제외</u> <u>되는 경우에는 제1</u> <u>호와 제2호에 따른</u> <u>비용 지원을 월 50</u> <u>만 원 이내로 할 수</u> <u>있다.</u></p> <p>1. ----- ----- ----- 50-----</p> <p>2. 지원 대상자에 대 한 건강관리비 지원 : 월 50만 원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</p>	<p><u>제5조(지원사업) 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만,</u> <u>제1호 및 제2호에</u> <u>의해 법령 또는 다</u> <u>른 조례에 따른 지</u> <u>원대상자에서 제외</u> <u>되는 경우에는 제1</u> <u>호와 제2호에 따른</u> <u>비용 지원을 월 50</u> <u>만 원, 월 30만원</u> <u>이내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(개정안과 같음)</u></p> <p>2. 지원 대상자에 대 한 건강관리비 지원 : 월 30만 원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</p>

음)

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
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을 월
5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다.

제5조제1호 중 “30”을 “50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
한다.

2.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: 월 30만 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</p> <p>1.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: 월 <u>30만 원</u></p> <p>2.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(본인부담금 중 월 <u>30만 원 이내로 한다</u>)</p> <p>3. ~ 5. (생 략)</p>	<p>제5조(지원사업) ----- ----- ----- <u>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을 월 5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----- ----- <u>50</u>-----</p> <p>2.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: 월 <u>30만 원</u>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